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정밀 기능공이 현장일을 마친 후 막걸리를 마시고 취침하였으나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체부검 결과 “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진단된 경우

(89-11호 '89. 1. 23. 기각)

재결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이 ○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8동

원처분청: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상 동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8동

피재근로자 성명: 김 ○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8동

소속: ○○정밀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신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11. 7.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근로자 고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1987년 11월부터 ○○정밀의 기능공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전선(주) 군포공장의 각종 기계를 해체하여 ○○전선(주) 전주공장에 기계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데 기술지원을 위해 연장근무 명령(1988. 5. 1)을 받고 전주에서 출장 근무중인 1988. 6. 12.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2명)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동일 23:30 경 취침하였으며 익일 07:10 경 동료에 의하면 변사체(사망)로 발견되었으며 그의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사체부검한 결과 그 소견이 “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사료됨”으로서 이를 업무의 재해로 판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출장근무 중에 하루 10-14시간씩 연장 근무하므로서 과로에 의한 취침중 의식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

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사망이 보험법 제 3조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9. 1. 4 신○○)
2. 원처분청 의견서(1989. 1. 4.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 11. 7 오○○)
4. 유족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부지급 통보 공문 사본(1988. 9. 22.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5.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사본(1988. 조사자행정주사보 이○○)
6. 사망사건 원인 조회 회보 사본(1988. 9. 19. 전주경찰서장)
7. 감정서 사본(1988. 7. 6.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사 강○○)
8. 건설공사 발주 계약서 사본(1988. 4. 18. ○○전선(주) 대표이사. ○○정밀 대표)
9. ○○전선 기계이설공사 근무일지 기록문 사본(○○정밀)
10. 문답서 사본 및 기타

이상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피해자는 1988. 5. 1 ○○전선(주)전주공장에 기계 설치하는 작업(○○전선과 ○○정밀과의 용역계약)을 하는데 기술지원을 위해 현장 출장 근무중인 1988. 6. 12.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 2명과 같이 막걸리를 마시고 동일 23:30분 경 취침하였으며 익일 07:10 경 동료에 의하여 변사체(사망)로 발견되었으며 그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사체부검 결과 소견이 “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사료됨”으로서 업무외 재해로 판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해자가 출장중 하루 10-14시간 씩의 과로에 의한 취침중 의식장애 등 원인에 의하

여 업무상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정밀이 ○○전선(주)전주공장의 기계설치 등 공사의 도급을 받고 이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 3명을 1988. 5. 1. 전주 현지에 출장근무 명령을 하였고 현지 근무중인 1988. 6. 12.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 2명과 같이 막걸리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동일 23:30 경 회사 지정여관에서 취침하였으며 익일 07:10경 동료에 의하여 변사체(사망)로 발견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둘째: 피해자의 사인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사체부검을 의뢰한바 그 감정결과 소견은 “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사료됨”임이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도 동일 소견이다.

세째: 피해자의 경우 업무일지 기타 등 자료를 분석한바 하루 1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업무상 과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네째: 피해자의 업무상 여부를 알기 위하여 대한의약협회장과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과 원처분청의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기타 동료근로자들의 문답서내용도 본건 심리에 충분히 참작하였음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해자의 경우, 출장근무중의 재해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수 있고 업무상 과로도 사인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사인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감정을 한바 의사 강○○ 교수의 사체부검 감정서상 사인이 “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사료됨”으로서 피해자는 동료와 같이 사망전일 막걸리를 음주한 것이 주 원인이 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이는 의학적으로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해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통상(주) 근로자가 작업대기 중 족구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경련을 호소하여 후송하였으나 “직접사인:급성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

(89-53호 '89. 4. 17.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김○○

주소 : 인천시 북구 부평 5동

원처분청 : 인천지방노동청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피재근로자

성명 : 문○○

주소 : 인천시 북구 부평 5동

소속 : ○○통상(주)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인천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11. 3.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해자 “문○○”(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 통상(주)소속 근로자로서 1988. 10. 4. 11:30 경 작업량이 없어서 대기중 피해자외 7명의 근로자들과 같이 자의로 2개조로 편성하여 족구를 하던 중(전반전 40분, 10분 휴식, 후반전 10여분 경과증임, 갑자기 동료근로자에게 심장에 경련이 일어났다며 간호해달라고 요구하여 동료근로자가 이를 부축하여

그늘진 곳에 눕혔으나 위독하여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 응급처치하였으나 사망한 사고로 부평안병원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급성심장마비(추정)”로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해당일에 작업이 없어 대기중 “피해자외 7명”이 임의로 족구를 하다 갑자기 위독하여 병원으로 후송후 사망한 사고로서 이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며 또한 회사 사칙에 의한 관행으로 하는 행사라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이탈한 행위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사업장에서 작업이 없이 대기중에 발생한 재해임으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청구사 및 이유서(1989. 2. 1. 김○○)
2. 원처분청 의견서 (1989. 2. 인천지방노동청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 12. 22. 홍○○)
4. 유족 및 장의비 사정서 사본(1988. 11. 인천지방노동청장)
5. 사체검안서 사본(1988. 10. 4. 부평안병원 의사 한○○)
6.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1988. 11. 조사자 7급 최○○)
7. 자문의 소견서(1988. 11. 1. 인천지방노동청 자문의)

8. 진술조서 사본(1988. 10. 5. 백○○, 1988. 10. 4. 김○○)

9. 자술서 사본(1988. 10. 15. 최○○, 1986. 10. 10. 정○○, 이○○)

10. 근로계약서 사본(1988. 4. 1. 사용자 한○○, 근로자 문○○)

11. 사실확인서(1989. 3. 28. 세광교회 담임목사 유○○)

12.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데, 피재자 “문○○”는 ○○통상(주)소속 근로자로서 1988. 10. 4. 11:30 경 당일은 회사작업량이 없어서 대기중 피재자 외 7명의 근로자들과 같이 자의로 2개조를 편성하여 족구를 하던 중 갑자기 동료근로자에게 심장에 경련이 일어난다 간호해달라고 요구하여 동료근로자가 이를 부축하여 그늘진 곳에 눕혔으나 위독하여 즉시 인근병원으로 후송, 응급처치하였으나 사망한 사고로 부평안병원의 사체 검안서상 “직접사인:급성심장마비(추정), 중간 및 선행사인:미상”으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재해당일은 작업량이 없어 대기중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이탈한 행위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적용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대기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피재자의 소속 회사는 섬유제품 제조업체로서 1978. 10. 10 창립(대표자 이○○)하였으나 체무 관계로 1985. 4. 16. 법정관리업체(법정관리인:한○○)이며 섬유제품의 물량이 없어 수시로 작업을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일단 출근하여 자유대기형태로 사업장내에서 자유로히 대기하고 있으며 평소 대기중에는 장기놀이, 족구, 기타 운동 등으로 근로자 자의에 의하여 행위하며 사업주의 지배나 지시를 전혀 받지않은 상태였다고 사료되는 점(대기중이라도 급료는 계산 지급함)

둘째:피재자는 1988. 10. 4은 정상출근하였으나

작업량이 없었으므로 당일 11:30경 “피재자외 7명”이 자의로 2개조를 편성하여 족구를 전반 약 40분 휴식 10분 후반전 10분이 경과할 때 갑자기 심장에 경련이 난다는 이유로 간호를 요구, 동료들의 부축으로 잠시 그늘진 곳에 누워있다가 위독하여 인근 부평병원에 긴급 후송하였는바 사망하였으므로 사체 검안서상 “직접사인:급성심장마비(추정), 중간 및 선행사인:미상”이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상의 상황으로 보아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이냐의 여부를 심리한바 근로자들은 평소 정상 출근 하나 회사의 업무량 확보의 부진으로 수시로 대기 근무케하고 대기 근무중에는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위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는 관계없이 장기놀이, 공놀이 등 근로자 임의로 선택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1988. 10. 4에도 작업량이 없어 당일 11:30 경 피재자외 7명이 결정하여 2개조로 나누어 족구를 하던 중 피재자가 갑자기 심장에 이상을 느끼고 간호를 요구한 후 위독하여 인근 부평안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로서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급성심장마비(추정)”임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다.

피재자의 경우 대기중 자유의사에 따라 족구경기를 거행한 것은 사용주로 하여금 특별히 경기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다른 근로자도 자유의사에 따라 대기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사인이 급성심장마비(추정)로서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은 사실상 “미상”이므로 업무기인성으로 인정할수 없음이다.

따라서 피재자의 행위는 업무대기중 자의에 의한 행위로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재해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인이 “급성심장마비”(추정)로서 사실상 “사인 이상”임으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적용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